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명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25-17020
재 결 일 자	2026-05-19
재 결 결 과	기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6. 청구인에게 한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학회'(대표자 : 박○진)를 단체명으로 하여 2025. 4.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에게 '사회인지발달***' 민간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격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7조 등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되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 신설 제한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5. 8.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격의 등록 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자격은 발달심리학의 기초 이론인 '마음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유아와 아동이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파악·표현하도록 돕는 교육 또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규정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상담 분야는 이 사건 자격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정의된 정신질환자등에 일반 유아·아동이 포함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논리는 법령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이므로, 명백한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자격의 업무는 일반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정신질환자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활·치료·복지 지원을 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격이 등록되면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또는 준임상적 개입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위해성에 대한 입증도 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격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내부 회의만 거쳤을 뿐, 관계 전문가의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문가 심사의 절차 없이 추상적 위해 또는 우려만으로 이 사건 자격의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1호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규정된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교육, 상담 등과 관련되는 분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대하여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나.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관 부처인 피청구인에게는 정신건강 관련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으며, 위 가항의 공고 역시 '정신질환자등'에는 일반 국민까지 포함하는 것인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년 5월부터 위 공고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정신질환자, 그 밖의 국민 또는 최소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치료, 교육, 상담 등의 분야와 관련된 민간자격의 신설에 대해서는 일절 금지의 분야로 간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자격의 수행 직무에는 '심리평가', '사회인지 결손 아동 평가 및 장단기 목표 수립',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개입계획 수립 및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자격 등록의 주무 부처를 피청구인으로 선정한 이유 역시 이 사건 자격의 직무가 정신건강 영역의 기능적 어려움을 다루고 예방적 교육을 넘어 준임상적 개입이나 비의료적 심리개입을 수행하는 형태라고 하며, 나아가 검정기준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자격의 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교육, 상담 등과 관련되는 분야 및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정신

건강전문요원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하고, 관련 정신건강복지법령에는 이 사건 자격과 같은 자격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전문가 심사 등을 요건이나 절차로 한 규정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자격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등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되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 신설 제한분야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자격기본법 제1조, 제2조, 제17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2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보건복지부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4.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에게 신청인 단체명을 '한국***학회'로, 대표자를 '박○진(청구인)'으로,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각각 기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자격 등록을 신청하였다.

- 다 음 -

직무내용	마음이론과 같은 발달심리의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유아와 아동이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알고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며 타인의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심리적·인지적·행동적 접근을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초급] - 유아와 아동이 기본적인 사회적 규칙(예: 차례 지키기, 인사하기 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놀이, 그림책, 역할극 등을 통해 도움 - 지도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상위급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실습 위주의 활동을 수행 [중급] - 아이들이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거나, 감정을 더 정확

	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 예) 친구와 싸웠을 때 어떻게 할까?와 같은 간단한 사회적 문제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처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활동 - 필요한 경우 보호자 상담이나 기본적인 평가를 보조 [고급] - 아이의 사회적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맞춘 개별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가능. 예)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등 다양한 배경의 유아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입을 시행 - 아동의 사회인지 발달을 돕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거나 상담 가능하며, 초급과 중급의 수퍼비전 가능 [전문가급] - 아이의 사회적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맞춘 개별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 예)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등 다양한 배경의 유아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입을 시행 - 아동의 사회인지 발달을 돕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거나 상담가능하며, 초급 ~ 고급의 수퍼비전 및 관련 이론 강의 가능
검정기준	[초급, 필기] - 사회인지 및 아동 발달 등 기초 이론 및 개념 이해(예: 마음이론, 마음읽기 등) - 놀이, 그림책, 역할극 등의 매체 활용 가능 여부 - 상위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심리적·인지적·행동적 접근 방법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돕는 능력 [중급, 실기] - 또래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활동 기획 능력 - 간단한 사회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도 방법 숙지 - 보호자 상담 보조나 아동 관찰 및 기초 평가 능력 - 개별 및 그룹 지도 계획서 작성 및 활동 진행 능력 [고급, 실기] - 유아와 아동의 사회인지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개별 개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정서적/행동적 문제 포함)에 대한 맞춤형 개입 설계 및 실행 역량

	- 부모 및 교사 대상 지도 및 상담 능력 - 초급 및 중급 대상 실습지도(Supervision) 능력 [전문가급, 면담] - 고급 수준의 개입 능력과 더불어, 자격자 교육 및 이론 강의가 가능한 수준의 전문성 - 사회인지 발달 평가 및 개입 프로그램 자체 개발 능력 - 복잡한 사례(다중문제, 다문화, 장애 포함)에 대한 통합적 접근 역량 - 초급 ~ 고급 자격자에 대한 수퍼비전 및 자문 능력

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2025. 6. 10. 청구인에게 제126차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 심의를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2025. 6. 16.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직무에 대한 추가설명	1. 직무내용에 관한 설명 다른 사람의 감정, 의도, 사고 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이는 타인의 상태를 추론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반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예를 들어 타인의 표정이나 말을 해석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입장에서 조망하는 능력 등을 포함함 사회인지는 '사회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마음이론이 발달하는 4세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함 이를 위해 해당 자격소지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요구됨 ○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응적 반응(예 : 공격성)의 원인을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정서적인 측면 등에서 찾아내기 위해 심리검사와 평가(또는 보조) 보호자 상담을 수행한다. - 심리검사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이고 심리평가는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고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보다 전문성을 요함 ○ 사회인지가 결손된 경우 아동의 발달사, 가족환경, 또래 관계 등을 포함한 다면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심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맞는 장단기 목표를 수립한다. ○ 유아와 아동의 반응에 따른 개입전략을 세우고 직접적인 개입과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상담 등도 필요에 따라 진행한다. - 초급 ~ 고급의 사례 회의를 통한 관리 감독 역할을 하며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개입계획 수립 및 외부 자문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함(예 : 폭력적인 아동에 대한 응용행동분석적 접근) 2. 주요 직무(업무, 일)의 비중 ○ 사회인지 프로그램 현장 지도 및 활동 60% ○ 심리평가 및 개입계획 수립 20% ○ 부모상담 20% 3. 직무의 수혜대상 ○ 만 4세 이상 유아 및 초등학생 아동 중 사회적 규범 이해, 사회적 행동, 감정 조절,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 발달지연 또는 자폐스팩트럼 특성, ADHD, 불안이나 공격성 등이 강한 유아 및 초등학생
검정과목	1. 인지심리학 : 주의, 기억, 문제 해결, 사고 등의 인지고정에 대한 기본이론 학습, 사회적 판단과 정보처리 과정의 인지적 기초 이해 2. 발달심리학 : 유아기부터 아동 청소년기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 이론 중심, 마음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인지 발달에 대한 통합적 이해 3. 심리검사 : 인지, 정서 행동, 사회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 검사 실시와 해석방법, 진단 및 전문적 개입 전략 수립 4. 심리상당학 : 내담자의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을 탐색하고 개입하기 위한 상담이론과 기법, 아동 및 보호자와 면담 및 대화기법 등 5. 응용행동분석 : 문제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행동의 형성을 돕는 기법을 배움(예 : 촉구와 용암, 토큰경제, 차별 강화 전략 등)
주무부처 선정사유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 1. 자격의 목표가 ‘유아와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개입’이기 때문으로, 사회인지발달전문가는 생물학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사회인지에 결손이 있는 유아와 아동의 타인 관점 이해, 감정인식 및 조절, 사회적 문제 해결, 또래 관계 형성 등 심리, 정서 행동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문적 개입임 2. 인지, 놀이, 행동, 미술 등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들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사회인지발달전문가도 개별 심리평가, 인지, 사회적 개

	입, 보호자 상담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이 타당함 3. 유아와 아동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규범 이해, 타인이해, 감정조절, 또래 관계, 사회적 행동 문제 등 정신건강 영역의 기능적 어려움을 다루고 예방적 교육을 넘어 준임상적 개입의 성격으로 비의료적 심리개입을 수행하는 형태로 보건복지부 자격기준에 부합함

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2025. 7.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격 등록 여부의 결정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자격명	금지분야	
	해당여부	사유
사회인지발달***	해당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1호)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규정된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 교육, 상담’ 등과 관련된 분야, 같은 법 제17조 등에 규정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와 관련된 분야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2018. 12. 31.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18-821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31. 보건복지부장관

1. 제목 :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공고일 ~ 재공고일까지
3.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신설금지

○ 정신건강복지법

① 제3조에 규정된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 교육, 상담’ 등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5조의2에 규정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지원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③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자격기본법」 제1조 및 제2조를 종합하면,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 자격은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2)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제1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제2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제3호),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하고(제1항),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제4항).

3)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종합하면, ‘정신질환자 등’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약물중독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 등)을 말한다.

4)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으며(제1항),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2. 개별업무에 따르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정신건강간호사는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 정신질환자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 기획·수행'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자격이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임의로 법령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처분에 전문가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란 일정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에서 그 직무내용인 행위가 강행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이거나 무자격자의 직무수행이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자격 명칭은 '사회인지발달***'이고, 그 직무내용에는 '부적응 반응(공격성)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도구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심리평가, 보호자 상담 수행', '사회인지가 결손된 경우 심리평가 실시',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개입계획 수립 및 교육' 등이 포함되고, 그 직무 수혜대상은 '발달지연 또는 자폐스팩트럼 특성, ADHD, 불안이나 공격성 등이 강한 4세 이상 유아 및 초등학생'으로, 그 검정과목에는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 '심리검사', '심리상담학', '응용행동분석'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보건복지부를 주무관청으로 지정한 이유를 제시한 자료에는 '이 사건 자격 직무는 타인이해, 감정조절, 사회적 행동문제 등 정신건강 영역의 기능적 어려움을 다루고, 준임상적 개입 또는 비의료적 심리개입을 수행하는 행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이 사건 공고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규정된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교육, 상담 등과 관련된 분야 및 같은 법 제17조 등에 규정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① 청구인이 민간자격으로 신청한 이 사건 자격의 직무내용, 수혜대상, 검정과목 등에 비추어 보면, 정신질환자등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치료, 교육, 상담 등의 분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심리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정신건강작업치료사(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수행 평가,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 기획·수행) 등의 업무 범위와 유사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자격은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따로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간자격을 규제할 필요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국가자격과 중복 또는 유사한 민간자격을 별도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혼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국가자격 제도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③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격이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및 제17조 등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